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6. 9(금) 10:00

#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0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## 2. 제안이유

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역의 위기가 지속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,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지역과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내용 (안 제5조)
- 라. 우대 및 지원중단 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 - 1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
  - 2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6. 1. ~ 2023. 6. 7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여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내용 (안 제5조)
- 4) 우대 및 지원중단 (안 제6조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,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의 경감을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0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